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에 재난 관련 사업 명시 〉

■ 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31호)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24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임이자의원안(의안번호 제2209731호)	1
2. 박홍배의원안(의안번호 제2209824호)	1
III . 검토의견	3
1.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에 재난 관련 사업 명시	3
※ 참고자료	10
1. 국립공원 재난 대응체계도	10
2. 국립공원공단 산불진화장비 보유 현황 등	11

I. 제안경위

2025년 4월 11일 임이자위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4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5년 4월 15일 박홍배위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임이자의원안(의안번호 제2209731호)

최근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에서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바 있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음.

그런데 전국 22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 및 재난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명시되지 않아 관련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국립공원공단 사업에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호의2 신설).

2. 박홍배의원안(의안번호 제2209824호)

지난 3월 발생한 지리산국립공원 및 주왕산국립공원에서의 대형산불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폭설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불 등 각종 재난의 특성을 이해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재난관리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이며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유관기관임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공원공단법」에는 공단이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관리 권한 및 업무범위 등에 대하여 명시된 바가 없어 공단이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등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국립공원 내 산불, 산사태 등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

Ⅲ. 검토의견

1.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에 재난 관련 사업 명시

개정안은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에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임이자의원안),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박홍배의원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임이자의원안	박홍배의원안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5. (생략) 6. ~ 13. (생략)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사업)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u>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 13.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제9조(사업) ----- ----- ---. 1.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u>5.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u> <u>6. ~ 14. (현행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u> 15. ----- <u>제14호</u> ----- ----- -----

현행	임의자의원안	박홍배의원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¹⁾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공공기관)으로,

「국립공원공단법」에 규정된 국립공원의 보전, 국립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등²⁾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³⁾ 및 「산림보호법」

1) 「국립공원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립공원공단법」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립공원의 보전
2. 국립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
3.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4.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5. 자연공원의 청소
6.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홍보
7.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교육·보급 및 운영
8.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9. 자연공원 보전·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에 따른 ‘산불유관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음4).

또한, 「국립공원공단 정관」 제27조제17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부여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조직을 갖추고5), 산불, 산사태, 안전사고 등 국립공원 내 각종 재난에 대해 훈련, 안전점검, 장비운영,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음6).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①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법인을 말한다.

4.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소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그 지부·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법인을 포함한다)

「환경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5-54호) [별표]

재난관리책임기관 목록

연번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비상연락망(사무실)	지정일자
1	한국수자원공사	306-82-0047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042-629-2959	2025. 4. 1.
2	한국환경공단	137-82-07000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032-590-3234	2025. 4. 1.
3	국립공원공단	211-82-0654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22(반곡동)	033-769-9600	2025. 4. 1.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37-82-03566	인천광역시 서구자원순환로 170(백석동)	032-560-9318	2025. 4. 1.
-	이	하	여	백	-

4) 「산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산림보호법」 제2조제9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2.~3. (생략)

4.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5) <참고자료 1. 국립공원 재난 대응체계도(조직도)>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6.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2025년 국립공원 재난관리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재난 관리 예산	총 계(① + ②)		39,501
	① 국립공원공단출연		34,501
	－ 재난예경보시설운영 (탐방안전CCTV, 통제시스템, 실시간경보시스템)	‘25.1.~12.	4,455
	－ 산불예방 및 진화시설 확충	‘25.1.~12.	4,972
	－ 국립공원구조대 운영	‘25.1.~12.	399
	－ 방재장비 및 물자구입	‘25.1.~12.	1,061
	－ 탐방안전프로그램 운영	‘25.1.~12.	309
	－ 재난취약지구 관리	‘25.1.~12.	3,160
	－ 산악안전교육원 운영	‘25.1.~12.	77
	－ 헬기운영	‘25.1.~12.	1,668
	－ 헬기도입(2대)	‘25.~’27.	18,400
	② 2025년 산불 재해복구사업(산불재해대책비)7)	‘25.1.~12.	5,000

자료: 환경부

다만, '25년 주왕산·지리산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피해를 계기로 산불 예방 및 재난 지원 관련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효율화를 위하여 「국립공원공단법」에 규정된 법정사업에 ‘재난’ 관련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보완하여야 한다.

7) 재해대책비(7140-300) 세부사업 중 국립공원공단 재해복구비(법정민간대행사업)

[최근 5년간 국립공원 산불 피해 현황]

연도	발생공원	건수	피해내용		
			면적(ha)	인명	재산피해(공원시설) 등
2021년	4	4	1.78	-	
2022년	10	18	10.42	-	
2023년	8	13	131.78	-	· 주민시설 15동(주택, 창고 등)
2024년	1	1	0.09	-	-
2025년	4	5	3,521.55	-	· (탐방로) 5.174km · (공원시설) 탐방지원센터 등 10개소 · (재난예경보시설) 자동통제시설 등 5개소

자료: 환경부

실제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산사태,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업무의 재난관리주관기관⁸⁾인 ‘산림청’과 달리,

국립공원공단은 독자적인 지휘·명령권 등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산불유관기관’으로 되어 있어⁹⁾¹⁰⁾ 구조적 한계가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자연재난 유형
마. <u>산림청</u>	「산림보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재난관리주관기관	사회재난 유형
커. <u>산림청</u>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붕괴·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9) 2026년 2월 시행예정인 「산림재난방지법」에서도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지방산림청만이 규정되어 있음.

「산림재난방지법」(2026.2.1.시행)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산림재난방지기관”이란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을 말한다.

11.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이란 산림재난방지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참고로, 국립공원 구역에서 발생하는 산림재난방지업무 수행시 국립공원공단을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828호)과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

있다고 함¹¹⁾).

이에 개정안은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에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 또는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을 신설하여 재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국립공원 내 체계적·안정적 재난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 심사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국립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재난의 예방부터 피해복구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국립공원공단의 주도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사업범위 확대·명확화를 위해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법안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²⁾.

참고로, 개정안에 대한 유사입법례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의 법정사업으로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법」이 있으며¹³⁾,

수진화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729호)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⑤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2) 임의자의원안의 경우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을, 박홍배의원안의 경우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을 사업으로 규정하였는데, 재난에 대한 일반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태풍·홍수 등을 포함한 자연재난과 화재·붕괴 등을 포함한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 ‘재난관리’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13)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5. (생략)

공단의 법정사업에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공원구조대 편성·운영’을 포함시키는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626호)와

현행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는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79호)¹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문 의 처
02)6788-5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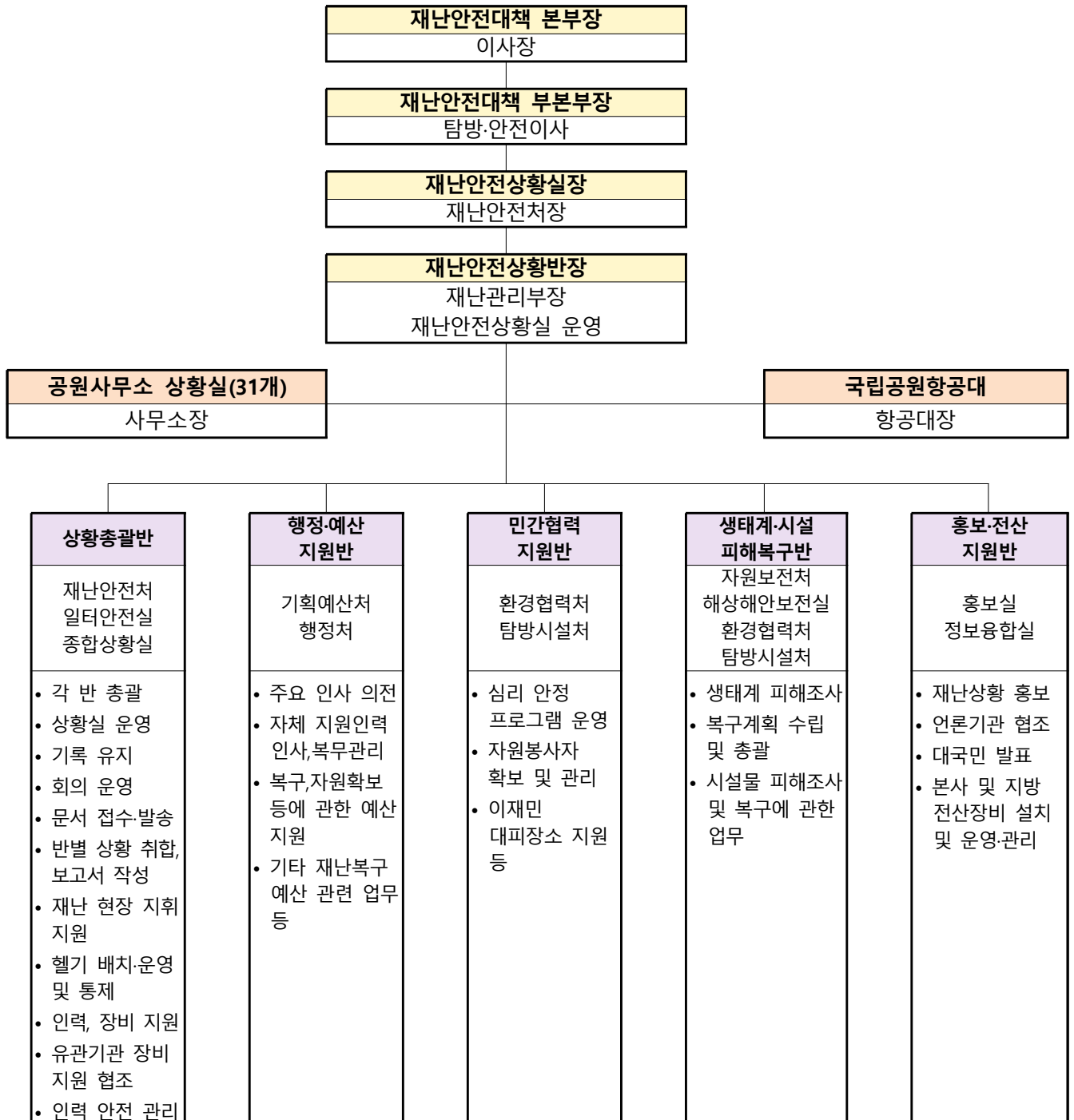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14)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79호) 제안이유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며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공단 기능의 재배치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 참고자료

1. 국립공원 재난 대응체계도



국립공원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시 기존 국립공원 종합상황실은 재난안전상황실 업무지원

※ 출처: 환경부

2. 국립공원공단 산불진화장비 보유 현황 등

○ 산불진화장비 보유 현황(2025년 3월 기준)

구분	계	산불진화장비									
		진화헬기	감시카메라	차량장비		팀 진화장비					기타·개인진화장비 (등짐펌프 등)
				진화차량	진화차량 고성능	장비(중형) 기계화진화	진화장비 예취형	살수기	엔진톱	진화기 에어	
합계	15,000	1	149	95	4	58	11	15	179	87	14,401

○ 겨울철 방재물자 및 제설장비 현황(2024년 11월 기준)

구분	방재물자		제설장비(3,020점)						
	모래 (ton)	친환경 제설제 (ton)	차량 (대)	제설기 (대)	모래 살포기 (대)	트랙터 (대)	눈삽 (개)	넙가래 (개)	빗자루 (개)
계	126.1	144.6	201	68	44	3	954	853	897

○ 여름철 방재물자 현황(2024년 5월 기준)

구분	수방자재						응급복구 장비				
	소계	포대 (매)	덮개 (개)	말목 (개)	로프 (타래)	기타공구 (개)	소계	산불차 (대)	굴삭기 (대)	트랙터 (대)	기타차량 (대)
계	21,750	16,593	1,095	885	369	2,808	273	86	9	4	174

※ 출처: 환경부